

● 연구용역 관리규정(0214)

제정 2021. 9.29. 규정 제638호

개정 2022. 9.27. 규정 제66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1절 제3호 라목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발주부서”란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발주 및 감독하는 부서를 말하며, “발주부서장”이라 함은 발주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3. “계약부서”란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도시주택연구소장을 말하며 “관리부서장”은 도시주택연구소장을 말한다.
5. “연구용역 수행자”란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 2 장 연구용역 운영

제4조(사전검토) ① 발주부서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자체검토 후 업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 1호 서식】의 연구용역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

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등록·제출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2. 연구용역의 개요 및 내용
3. 연구용역의 중복성 검토내용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여부(비(부분) 공개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호 서식】 비(부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업무시스템을 통해 발주부서에 회신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을 검토한 후 제5조에 따른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인 연구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2.9.27.>

④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발주부서는 경기도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1항의 요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는 제1항의 요청서 제출시 【별지 제3호 서식】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⑥ 발주부서는 제5항의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결과 중복이 되는 경우 제1항의 요청서와 함께 【별지 제 4호 서식】 선행용역과의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5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사는 연구용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관

리부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심의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2.9.27.>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관리부서의 본부장이 미리 지정·위촉한 자 중 심의위원회 개최 시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을 위원장이 선발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학회 또는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분야는 따로 정한다. <개정 22.9.27.>

1.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유관 연구기관 등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으로 근무 중인 사람
3.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 자격으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에는 관리부서 소속으로 간사 1인을 둔다.
-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타당성 검토(중복성 포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물의 비공개, 부분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 추진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2.9.27.>

-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긴급을 요하는 용역 및 대외 보안이 필요하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5일전에 심의위원에게 심의안건을 사전설명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추진 중인 연구용역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역 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 5호 서식】 연구계획 심의 평가서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간사는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 6호 서식】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결과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전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 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⑧ 관리부서장은 회의록을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책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별지 제 7호 서식】, 위원 위촉 청렴서약서 【별지 제 8호 서식】를 징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8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등록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관리부서

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 6호 서식】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추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용역범위를 확정하고 계약부서에 품의 요청 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통제를 확인한 후 계약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중간점검) ① 발주부서장은 연구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 9호 서식】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2.9.27.>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용역 수행대상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발주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

가하기 위하여 용역계약기간 종료 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에 따른 1

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2.9.27.>

② 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각각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평가하여 【별지 제 10호 서식】 연구과제 결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역목표의 달성도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5. 용역결과의 유사성검토

④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제12조(용역결과유사성 검토 및 사후조치) ①발주부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정부가 구축한 학술지 인용색인(KCI) 및 표절검사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용역 결과의 유사성 【별지 제 11호 서식】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성 검토 결과 부정행위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용역비 환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2.9.27.>

제1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발주부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용역 수행대상자에게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때 ‘평가’는 ‘재평가’로 본다.

제 3 장 연구용역 관련 업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14조(업무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부서는 업무시스템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인프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경영정보부)와 협조하여 업무시스템을 관리해야한다.

② 발주부서장은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시스템의 이용에 적극 협조한다.

제15조(연구용역결과물의 등록·공개) ① 발주부서장은 연구

용역 결과물을 검사검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 업무시스템

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수당 등) 제5조, 제11조에 따른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1.9.29.>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연구용역 사전검토 요청서

용역명			
신청부서		담당자	
용역기간		공개여부	※비(부분)공개 시 사유서 (별지 제2호) 제출
예산(추정)	예산과목		
	금 액		
계약방법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등		
필요성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도 사유 기재		
용역내용			
유사용역사례 (최근5년이내)	용역(연구과제)명, 수행기관, 수행연도 명시 (예시) 용역명(○○공사, 2020) ※세부내용은 선행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에 기재		
용역결과 활용방안			

<첨부서류>

1. 과업지시서 1부.
2. 비(부분)공개 사유서(필요한 경우)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4. 선행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부분) 공개 사유서

비(부분)공개 사유서

용역명			
신청부서		담당자	
용역기간		사업비	
용역내용			
비공개 범위	☐ 내부만 ☐ 비공개		
비(부분)공개 사유			
조치사항			

유사 · 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검색웹사이트	접근방법	검색일자	중복여부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도서관	https://www.gplib.kr	'00.00.00	있음/없음
경기연구원	www.gri.re.kr > 연구보고서	'00.00.00	있음/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00.00.00	있음/없음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 연구검색	'00.00.00	있음/없음
공사 업무시스템	MIS > 계약현황(최근 5년이내)	'00.00.00	있음/없음

※ 최근 5년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에 의해 본 연구
용역과의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선행용역과의 차별성 검토 보고서

구분		용역내용
선행연구	1	○용역명: 수행년도: ○수행기관: ○용역목적: ○용역내용:
	2	○용역명: 수행년도: ○수행기관: ○용역목적: ○용역내용:
	3	○용역명: 수행년도: ○수행기관: ○용역목적: ○용역내용:
본연구 차별성	목적	
	내용	

심 의 의 건 서

☐ 안 건 명 :

☐ 분 야 :

☐ 의 결 :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구 분	내 용
심의의견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00 . 00 .

심의위원

(인·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결과

용역명			
일시 및 참석	일시 :	참석: 총 명 중 명 참석	
용역기간	20 . . ~ 20 . . (개월)		
사업비	천원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심의의견	“위원별 평가서 참조”		
비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비공개 관련 의견 (비공개 시 비공개 사유와 공개예정 시점)	“위원별 평가서 참조”		

상기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위원별 평가서

【별지 제9호 서식】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

용역명			
수행기관		용역 책임연구원	
발주부서		담당자	
용역기간		공개여부	
용역내용			
점검일자		연구원 담당자	
점검결과	· 용역 시행 목적과의 부합성 · 계약 내용への 충실성 · 일정계획에 따른 용역 진행 수준 · 기대 용역결과의 달성 가능성		
조치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 결과 평가서

연구 결과 평가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평가항목	평점기준					배점	득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연구목표 달성도	20	18	16	14	12	20	
추진방식 적절성	20	18	16	14	12	20	
연구내용 충실성	30	27	24	21	18	30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30	27	24	21	18	30	
합 계							
종합의견 · 연구추진 합리성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평가위원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연구용역 결과 유사성 검사 확인서

용역명			
용역기간		공개여부	
수행기관		용역책임연구원	
발주부서		담당자	
검사일자		사용프로그램명	
발주부서장	위 용역보고서는 유사성 검토프로그램(○○○)을 활용하여 Self Checking을 실시하고, 발주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유사성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유사성검토 결과 OO%에 대한 의견 기술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석 확인서

□ 건 명 :

□ 일 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은 행 계좌번호	서 명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당사는 심의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은행 계좌번호	심의수당 지급 진행	6년 (법인세법 제116조에 근거,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의수당 지급절차 진행을 할 수 없어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항목	수집근거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발행자 보관용) 작성 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세법 제145조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